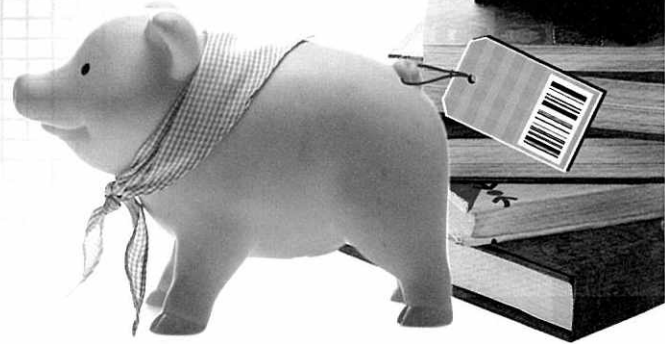


2012 돼지 이력제 시범사업

FTA의 높은 파고!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돼지 이력제에서 그 해법을 찾다!!

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 차장 강인수



도입배경

2010년 7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돼지열병청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할 때 이를 표시하여 사육부터 도축까지 일괄 관리하는 “전국양돈장 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농장 밖으로 돼지 이동시 농장별 고유번호를 돼지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미표시 돼지는 이동 및 도축이 금지된다. 이러한 “전국양돈장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돼지이력제가 시행되는데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인터넷 및 휴대전화로 구입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농장명, 생산자명, 도축장 등의 이력정보를 조회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돼지이력제의 개념

돼지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사육단계에서는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발급받아 돼지가 농장 밖으로 이동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 후 이동시켜야 하며, 사육두수 현황 및 이동시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위해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역추적을 위하여 이력번호(12자리)가 표시·유통되며 최종 소비자는 이력번호로 이력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사업추진 방향

돼지이력제는 2013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금년에는 16개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가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하여 돼지이력제 시행 근거를 마련 중이다.

돼지의 경우 사육개체수가 많아 개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동단위에 따른 돈군단위 관리가 원칙이지만, 종돈의 경우 개체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방역중심의 이력관리를 할 예정이다.

1유형 : 부경양돈농협, (주)선진, 목우촌 김제돈육 가공장, 논산계룡축협, 도드람양돈농협, 팜스토리, 제주양돈농협

2유형 : 한돈협회 포천지부, 한돈협회 안동지부, 강원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아이포크영농조합법인,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 충북도아지역농조합법인, 보성그린티양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리울

시범사업에서는 이력관리 적용 범위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제1유형에서는 사육단계에서 판매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도 이행방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제2유형에서는 사육단계에서 도축단계까지만 이력관리를 적용할 계획이며 주로 농가에서는 사육현황을 월단위로 위탁기관(브랜드경영체)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직접 신고토록 하여 위탁기관의 존치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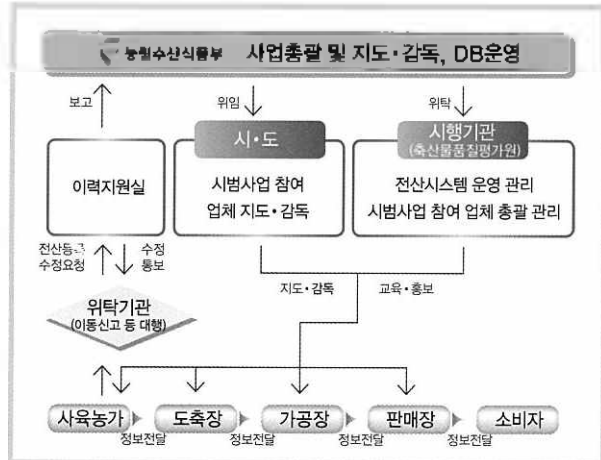
사업추진 체계

농림수산식품부(방역관리과)에서는 전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이력시스템 구축, 관련법령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에서는 동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동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

시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범사업 참여업체 총괄 관리 및 이력지원실(콜센터) 운영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단계별 제도 이행방안



① 사육단계



동시시켜야 한다.

그대상은 종돈장, 양돈농가, 인공수정센터(AI), 경매장 등이며, 이동내역을 관련 서식에 따라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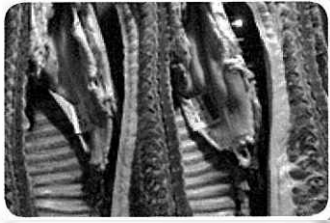
또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사육현황 정기신고를 이력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축출하 시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에 사육두수(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같음할 수 있다.

종돈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개체별로 출생·이동·폐사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정부로부터 농장식별 번호를 발급받아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표시하고 이



② 도축단계



가축 운송 시 출하 농장별로 분리 수송하여야 하며 농장 간 돼지가 섞여서는 안 된다. 또한 도축

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고 시 이력시스템에 신고 된 내용과 실제 출하두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과 출하두수가 상이한 경우 도축을 보류하여야 한다. 도축 후 가공장 및 판매장 반출 전 이력번호를 지육에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를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력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식육표지판에 해당 식육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매단위 포장일 경우 매포장마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구매하는 돼지고기의 생산자, 농장소재지, 도축장, 도축일, 위생검사결과, 비육돈·모돈, 포장처리업소 및 가공일자 등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당려**



③ 가공단계



가공장에서 지육 매입 시 거래내역서와 매입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공 시에는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이 원칙이나 부득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묶음번호 사용 시에는 반드시 구성내역을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공종료 후 각 개별 포장지 겉면에 이력번호를 표시 후 판매 및 반출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돼지이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을 구매하는 견인차 역할

이제 돼지이력제는 사육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엄격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을 구매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수입산에 비하여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이 보장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돈농가에서는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가 다소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국내 양돈사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④ 판매단계

판매장에서 부분육 매입 시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을 작성하여 이력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부분육은

